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며,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의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 하면서 인력 43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27명)을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편제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남해출장소를 폐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북부원예시험장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2명(8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축산과

학원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염소연구 강화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법정 필수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행정 지원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과 국립식량과학원에 밭연구팀을 폐지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

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 (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구정책과·연구개발과·연구관리과·농자재산업과 및 스마트농업팀”을 “연구정책과·연구개발과·연구관리과·농자재산업과·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으로, “보한다”를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푸드테크·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운영
2. 그린바이오·푸드테크·생명공학 분야 민·관 협력사업 계획 수립
· 추진
3. 그린바이오·푸드테크·생명공학 분야 유망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4. 그린바이오·푸드테크·생명공학 분야 법령 제·개정 대응 및 정책
지원
5.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6.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
량산업기술팀”을 “농촌지원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
과·식량산업기술팀”으로, “지도정책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
장”을 “농촌지원정책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도정책과장”을 “농촌지원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산업경영과 및 수
출농업지원과”를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업
경영과장”을 “농업경영혁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농업지원과장”을 “수출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
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을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기술지원과 및 농촌환경안전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및 농촌환경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보전·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8.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9.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10. 농작업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1.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

제12조제2항 중 “토양비료과·기후변화평가과·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변화평가과장을 “기후변화대응과·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를 두되,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을 “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을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농촌지도관”을 “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양비료과장”을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2.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7. 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평가과장”을 “토양물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제12조제4항제4호 중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을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농업과장”을 “재생유기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8.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제13조제2항 중 “곤충양잠산업과·양봉생태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며, 곤충양잠산업과장”을 “농업미생물과·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산업곤충

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으로, “양봉생태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을 “양봉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곤충양잠산업과장”을 “농업미생물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7호) 중 “유용곤충 자원”을 “유용미생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의 분류·동정·진단·분석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7.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의 안전관리·제어 및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 ⑤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소재 발굴·생산을 위한 농생명정보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유용소재 생산 농생명자원의 탐색 발굴 및 소재화에 관한 연구
3. 생명공학 활용 유용 소재 생산에 관한 연구
4. 식물체의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소재 개발 연구

5. 유용소재 생산을 위한 식물체의 유전, 생리, 환경에 관한 연구
6. 첨단생명공학기술 활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13조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봉생태과장”을 “양봉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미생물과장”을 “산업곤충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유용미생물”을 “유용곤충 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 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해충잡초방제과·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화학평가과장”을 “식물병방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작물 병 발생조사, 예찰기술”로, “평가기법”을 “피해해석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작물 병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병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5. 친환경·유기 농업 병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6. 농작물 곰팡이 독소의 진단·제어에 관한 연구

제14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물보호과장”을 “해충잡초방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병해충”을 각각 “해충·잡초”로 하고, 같은 호 중 “모형 개발”을 “피해해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유기 농업 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성위해평가과장”을 “잔류화학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1호) 중 “약효·약해·독성 시험 기준”을 “잔류 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3.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5.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7.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제14조제6항제8호 중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를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생물과장”을 “독성위해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평가
3. 농약·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4.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5.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스마트팜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안전재해예방공학과·농업위성센터 및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을”을 “스마트팜개발과·밭농업기계과·농업로봇과·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을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으로,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을 “농업위성센터장”으로,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원 또는 농업연구원으로 보한다”를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을 “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지능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스마트팜 종합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 연구
3. 수직농장 및 동물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연구
4. 스마트팜 최적 환경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5. 스마트팜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을 “발농업기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류·잡곡류·유지작물 등 발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3. 발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5. 생산기반 등의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성·내구성 향상 연구
6.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7.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8.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범용화 기계기술 연구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을 “농업로봇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농업로봇 기술 연구
2. 농업로봇 요소기술 개발
3. 농업로봇 기술 기반 농기계 지능화 연구
4. 농업로봇 안전성 및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제15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을 “수확후관리공학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고품질 유지 저장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저장·선별·유통·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제16조제2항 중 “유전체과·생물소재공학과·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을 “디지털육종지원과·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되, 디지털육종지원과장”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을 “슈퍼컴퓨팅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체과장”을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를 “작물의 유전체 구조·기능”으로, “표지”를 “대량 발굴·활용 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및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 유전체, 표현체 등 분석정보의 생산, 축적, 분석 및 활용 연구
4.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및 제공·활용
5. 작물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및 식물체 개발

6. 생명공학작물 소재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소재공학과장”을 “생물안전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4.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자공학과장”을 “슈퍼컴퓨팅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농업·생명 분야 빅데이터 수집·관리
2. 슈퍼컴퓨터 활용 분석 및 지원 환경 구축
3. 농생명 오믹스 데이터 통합·분석·활용 지원
4. 초고성능컴퓨터 운영·관리, 대국민 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서비스 운영·고도화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작물육종과·작물재배생리과·작물기초기반과·기술지원과·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밀연구팀을 두되”를 “기획조정과·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로,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기초기반과장 및 밀연구팀

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을 “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중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부작물부장”을 “기초식량작물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재배생리과·작물환경과·맥류작물과·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되, 품종개발과장·재배생리과장·맥류작물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부작물과장”을 “품종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을 “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벼 유전체 및 표현체 기반 육종 연구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확후이용과장”을 “재배생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밀은”을 “맥류는”으로,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 설정”을 “생리 및 생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3. 벼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제21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배환경과장”을 “작물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중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병해충”을 “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해(寒害) 등 재해”를 “생산환경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량작물의 신규 유입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구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맥류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맥류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맥류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 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7. 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 맥류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사료작물·פותגרם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사료작물·פותגר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이용에 관한 연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사료작물·פותגר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 פותגרם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5.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
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친환경·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제22조의 제목 “(남부작물부)”를 “(밭작물개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부작물부장”을 “밭작물개발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남부작물부에 밭작물개발과·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로, “논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생산기술개발과장”을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남부작물부”를 “밭작물개발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이용작물과장”을 “경지이용작물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기술개발과장”을 “스마트생산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발효가공식품과·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되,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

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2.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3.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4.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농식품자원의 수요자 기반 소비 확대 및 정책지원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효 미생물·원료 및 기반·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
4.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자원의 식품가공 소재화에 관한 연구
8. 전통주 등의 과학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푸드테크 접목 미래 식품 소재 개발 및 데이터 구축 기반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산자원의 푸드테크 소재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농산부산물물의 활용 기술 개발 및 자원순환에 관한 연구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육성계통 포함) 등 용도별 품질 및 감각평가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 등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스마트 품질 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등의 포장·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등 기후변화 대응 품질 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
5. 농식품자원의 표준화, 규격화에 관한 연구
6. 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24조의 제목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을 각각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바이오에너지작물”을 각각 “소득식량작물·바

이오에너지작물·아열대식량작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을 “소득식량작물·바이오에너지작물·아열대식량작물의 산업 소재화 기술·수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출장소)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38”을 “340”으로, 일반직 계 “337”을 “339”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을 “1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39”를 “341”로, 일반직 계 “338”을 “340”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4”를 “4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6”을 “1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8”을 각각 “48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을 “6”으로,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0”으로, 전산주사 “2”를 “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및 공업서기 “14”를 각각

“13”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1”을 “10”으로, 공업서기보 “5”를 “4”로,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를 “4”로, 농업연구관 “79”를 “77”로,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7”을 “20”으로,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을 “2”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을 “11”로, 농업연구사 “249”를 “21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9”를 각각 “483”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을 “6”으로,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0”으로, 전산주사 “2”를 “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및 공업서기 “14”를 각각 “13”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0”을 “9”로, 공업서기보 “5”를 “4”로, 운전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 중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5”를 “4”로, 농업연구관 “80”을 “78”로,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7”을 “20”으로,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을 “2”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0”을 “11”로, 농업연구사 “249”를 “21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8”을 각각 “38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 다음에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6”을 “5”로 하고, 행정서기 14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를 신설하며,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 다음에 “전산서기 1”를 신설하고, “전산서기 1”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 “6”을 “7”로, 운전서기보 “8”을 “9”로, 농업연구관 “73”을 “75”로 하고, 농업연구관 75 다음에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를 신설,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6”으로, 농업연구사 “155”를 “18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8”을 각각 “38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를 신설,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6”을 “5”로 하고,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3”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13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

는 농업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13”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6”을 “7”로, 운전서기보 “8”을 “9”로, 농업연구관 “75”를 “77”로 하고, 농업연구관 77 다음에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를 신설,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6”으로, 농업연구사 “153”을 “18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0”을 각각 “337”로, 3급 또는 4급 이하 “326”을 “33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1”을 각각 “32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317”을 “3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6호 춘진홍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 한다.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춘진홍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춘진홍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종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종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연구정책국에 <u>연구정책과 · 연 구개발과 · 연구관리과 · 농자 재산업과 및 스마트농업팀</u> 을 두 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 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 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 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 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 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으로 <u>보한다</u> .	②----- <u>연구정책과 · 연 구개발과 · 연구관리과 · 농자재 산업과 · 스마트농업팀 및 바이 오폐드테크팀</u> ----- ----- ----- ----- ----- ----- ----- ----- ----- ----- ---- <u>바이오오퍼드테크팀장은 농 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4.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u>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 발사업의 관리</u>	<u><삭 제></u>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

정 및 국내외 분양·반출 승

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 15. (생 략)

⑤ ~ ⑨ (생 략)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14. · 15.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 푸드테크 · 생명
공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
· 운영

2. 그린바이오 · 푸드테크 · 생명
공학 분야 민 · 관 협력사업
계획 수립 · 추진

3. 그린바이오 · 푸드테크 · 생명
공학 분야 유망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4. 그린바이오 · 푸드테크 · 생명
공학 분야 법령 제 · 개정 대
응 및 정책지원

5.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

제8조(농촌지원국) ① (생 략)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 · 기술보급과 · 농촌자원과 · 재해 대응과 · 식량산업기술팀 및 농업인안전팀을 두며, 지도정책과 장 · 기술보급과장 · 농촌자원과 장 및 재해대응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 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

발사업의 관리

6.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 · 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농촌지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농촌지원정책
과 · 기술보급과 · 농촌자원과 ·
재해대응과 · 식량산업기술팀 -
----- 농촌지원정
책과장 · 기술보급과장 · 농촌자
원과장 -----

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④ 삭 제

⑤ ~ ⑪ (생 략)

제9조(기술협력국) ① (생 략)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산업경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삭 제

⑥ 농산업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⑦ 수출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

-----.

③ 농촌지원정책과장-----
-----.

1. ~ 16. (현행과 같음)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기술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제기술협력과·국외농업기술과·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

-----.

③·④ (현행과 같음)

⑥ 농업경영혁신과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⑦ 수출농업기술과장-----

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
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
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
며, 기획조정과장·운영지원과
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
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 ④ (생 략)

⑤ 삭 제

<신 설>

-----.

1. ~ 9.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기획조정과·운영
지원과·기술지원과 및 농촌환
경안전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
· 운영지원과장·기술지원과장
및 농촌환경안전과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⑥ 농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보전
·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
술 개발
2. 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
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
구
5.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
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

	<u>용에 관한 연구</u> <u>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u> <u>8.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u> <u>9.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u> <u>10. 농작업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예방관리 시스템 개발</u> <u>11.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u>
제12조(농업환경부) ① (생 략)	제12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환경부에 <u>토양비료과·기후변화평가과·유기농업과</u> 및 <u>농촌환경자원과</u> 를 두되, <u>토양비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으로, <u>기후변화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으로, <u>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u> 으로, <u>농촌환경자원과장은</u>	② ----- <u>기후변화대응과·토양물환경과 및 재생유기농업과</u> 를 두되, <u>기후변화대응과장-----</u> ----- ----- ----- ----- ----- <u>토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u>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토양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 작물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

<신 설>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신 설>

④ 기후변화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 재생유기농업과장-----

----- 환경연구관-----

-----.

③ 기후변화대응과장-----

-----.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2.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 ---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 경감-----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7. 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④ 토양물환경과장-----

-----.

1. 국내·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2. <u>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u> 3. <u>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u> 4. <u>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 경감에 관한 연구</u> 5. <u>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u> 6. <u>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u> 7. <u>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u> ⑤ <u>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5. (생 략) 6. <u>친환경·유기 농업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u> 7. (생 략) <u><신 설></u> ⑥ <u>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연구</u> 2. <u>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u> 3. <u>농경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u> 4. --- <u>양분관리 및 영양생리</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⑤ <u>재생유기농업과장</u>-----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현행과 같음) 8. <u>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u> <u><삭 제></u>
--	---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보전
·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
술 개발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
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
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
구

5.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
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
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
구

제13조(농업생물부) ① (생 략)

② 농업생물부에 곤충양잠산업
과·양봉생태과 및 농업미생물
과를 두며, 곤충양잠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생태
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
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
한다.

③ 삭 제

제13조(농업생물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농업미생물과
·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산업
곤충과 및 양봉과를 두며, 농업
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농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산업곤충과장--- 양봉과장---
---.

④ 곤충양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신 설>

7. 유용곤충 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④ 농업미생물과장-----
-----.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삭 제>

6. 유해미생물의 분류·동정·진단·분석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7. 농산물 중 유해미생물의 안전관리·제어 및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5. 유용미생물-----
--

<삭 제>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
에의 생산 및 보급
<신 설>

⑤ 양봉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소재 발굴·생산을 위한
농생명정보 탐색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유용소재 생산 농생명자원의
탐색 발굴 및 소재화에 관한
연구

3. 생명공학 활용 유용 소재 생
산에 관한 연구

4. 식물체의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소재 개발 연
구

5. 유용소재 생산을 위한 식물
체의 유전, 생리, 환경에 관한
연구

6. 첨단생명공학기술 활용 고부
가가치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

⑦ 양봉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⑥ 산업곤충과장-----
 -----.

<u>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u> <u>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u> <u>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u> <u>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u> <u><신 설></u> <u><신 설></u> <u>5.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u> <u><신 설></u>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략) <u>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잔류화학평가과·작물보호과·독성위해</u>	<u>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분류·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u> <u>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u> <u>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사항</u> <u>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u> <u>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 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u> <u>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u> <u>7. 유용곤충 자원-----</u> -- <u>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u>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과 같음) <u>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식물병방제과·해충잡초방제과·잔류화학</u>
---	--

평가과 및 유해생물과를 두며,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신 설>

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신 설>

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를 두며, 식물병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해충잡초방제과장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식물병방제과장-----
-----.

1. 농작물 병의 분류·동정(分類·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병 발생조사, 예찰기술 -----
-- 피해해석에 관한 -----
--

4. 농작물 병 종합관리 기반기

5. <u>유해물질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설정 및 적용 연구</u> 6. <u>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 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u> 7. <u>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 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 발</u> 8. <u>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 경 잔류성, 이화학적 평가</u> 9. <u>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 류허용기준 설정 연구</u> 10. <u>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 구</u> 11. <u>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 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u> ④ <u>작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농작물 <u>병해충</u>의 분류·동정 (分類·同定) 및 진단기술 개 발 2. 농작물 <u>병해충</u>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u>병해충</u> 발생조사, 예 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u>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u> 5. <u>친환경·유기 농업 병 방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u> 6. <u>농작물 곰팡이 독소의 진단· 제어에 관한 연구</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u>해충잡초방제과장</u>----- -----. 1. ---- <u>해충·잡초</u>----- ----- -- 2. ---- <u>해충·잡초</u>----- ----- 3. ---- <u>해충·잡초</u> ----- -----
--	---

관한 연구

4.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6. 잡초 등 유해식물 모니터링 · 분류 · 동정 · 생리생태 및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⑤ 삭 제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농약의 약효 · 약해 · 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 · 약해 · 독성 평가

3. 농약 · 유해물질의 사람 · 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신 설>

6.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4. ----- 해충·잡초 -----

5. ----- 해충·잡초 -----
----- 피해해석-----
--

6. 친환경 · 유기 농업 해충 · 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⑥ 잔류화학평가과장-----
-----.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4. -----
-- 잔류 시험기준---

2.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3.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5.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6.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

평가

<신 설>

8.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⑦ 유해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중 생물적 유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2.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동정·진단·분석에 관한 연구

3. 유해미생물의 생리생태·오염관리 및 제어에 관한 연구

4.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노출위험평가 및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위해요소 종합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7.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8.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

⑦ 독성위해평가과장-----
-----.

1.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 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약해·독성 평가

3. 농약·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4.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5.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수확후관리공학과 · 안전재해예방공학과 · 농업위성센터 및 발농업기계화연구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제15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스마트팜개발
과 · 밭농업기계과 · 농업로봇과
· 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
성센터를 -----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
과장-----

--- 농업위성센터장 -----

-----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_____
_____.

1. ----- 기반 농업생산시

자동화 기술 연구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
생산시스템 연구

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
공정 자동화 연구

<신 설>

④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2.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
용기술 개발

3.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
의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4.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
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신 설>

<신 설>

<신 설>

스텝 지능화 --

2. 스마트팜 종합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 연구

3. 수직농장 및 동물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연구

4. 스마트팜 최적 환경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5. 스마트팜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④ 밭농업기계과장-----
-----.

1. 서류·잡곡류·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
구

3. 밭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
경감 기술 연구

5. 생산기반 등의 농업재해 예
방 및 안전성·내구성 향상
연구

6.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
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7.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

<신 설>

⑤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유통·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⑥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2. 농업시설, 생산기반 등의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성·내구성 향상 연구

<신 설>

구

8.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범용화 기계기술 연구

⑤ 농업로봇과장-----
-----.

1. 농작업 무인화를 위한 농업로봇 기술 연구
2. 농업로봇 요소기술 개발
3. 농업로봇 기술 기반 농기계지능화 연구
4. 농업로봇 안전성 및 표준화 기반기술 연구

<삭 제>

<삭 제>

⑥ 수확후관리공학과장-----
-----.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신 설>

5.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
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
구

7.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
진 기술의 개발

8.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
사·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9. 농작업 유해·위험요인의 평
가 및 저감기술·예방관리시
스템 개발

10.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

⑦ (생 략)

⑧ 발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잡곡류·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
구

3. 발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4. 농산물 고품질 유지 저장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저장·선
별·유통·가공 시설의 효율
화 연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생략)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 · 생물소재공학과 · 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표지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제16조(농업생명자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디지털육종지원과 · 생물안전성과 및 슈퍼컴퓨팅센터를 두되, 디지털육종지원과장-----

----- 슈퍼컴퓨팅센터장-----

③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1. 작물의 유전체 구조·기능 -----
대량 발굴·활용 기술 -----

2.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및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 유전체, 표현체 등 분석정보의 생산, 축적, 분석 및 활용 연구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④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생물체의 유용 대사산물 탐색·발굴 및 이용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 유전자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개발

4.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및 제공·활용

5. 작물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및 식물체 개발

6. 생명공학작물 소재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④ 생물안전성과장-----
-----.

1.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4.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⑤ 슈퍼컴퓨팅센터장-----
-----.

1. 농업·생명 분야 빅데이터 수집·관리

<u>2.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u> <u>3. 식물의 생장·분화·발달에 관한 유전자 기능 연구</u> <u>4. 작물 표현체 분석 및 정보 활용 연구</u> <u>5. 생명공학 소재 집단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u> <u>6. 농업형질개선을 위한 작물 형질전환시스템 구축</u> <u>⑥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u> <u>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u> <u>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u> <u>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u> <u>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u>	<u>2. 슈퍼컴퓨터 활용 분석 및 지원 환경 구축</u> <u>3. 농생명 오믹스 데이터 통합·분석·활용 지원</u> <u>4. 초고성능컴퓨터 운영·관리, 대국민 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서비스 운영·고도화</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제17조(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

<삭 제>

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자원부에 식생활영양과·발효가공식품과 및 기능성식품과를 두되,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식문화자원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
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삭제

7.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
한 연구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발효 미생물·원료 및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
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삭제

4.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
기술 개발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
용기술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
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에 관한
연구

8. 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9. 농식품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⑤ 기능성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
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
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
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
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에 관한 연구

5. 삭제

6. 삭제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
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
영지원과·작물육종과·작물재
배생리과·작물기초기반과·기
술지원과·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밀연구팀을 두되, 기획조정
과장·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
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

----- 기획조정과·운영
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
과장·작물재배생리과장·작물
기초기반과장 및 밀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간척지농업연
구팀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③ (생 략)

④ 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맥류(밀은 제외한다) 등
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요 형
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
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
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사료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작물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의

--- 농촌지도관-----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의
재배기술 개발

3. 벼·맥류(밀은 제외한다)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
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⑥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유전체 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 식량자원 활용 융복합 연구
를 통한 신소재 개발

3. 삭제

4. 식량작물 생산환경 개선 및
병해충 관리 연구

⑦ (생 략)

⑧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
배기술의 개발

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
구

3. 친환경·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삭 제>

④ (현행 제7항과 같음)

<삭 제>

⑨ 밀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밀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밀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밀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밀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밀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 밀의 재배기술 개발

7. 밀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 밀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9. 밀의 수확 후 건조·저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0. 밀의 가공·이용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11. 밀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의 개발

12. 밀의 포장·유통기술 개발

<삭 제>

에 관한 연구

제21조(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중부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가공식품 원료용 및 사료용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장-----

-----.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재배생리과·작물환경과·맥류작물과·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되, 품종개발과장·재배생리과장·맥류작물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종개발과장-----

1. 벼 등-----

2. 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요

연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의 유전자원 수집 · 이용에 관
한 연구

4. 중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신 설>

5. (생 략)

④ 수확후이용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 설정에 관
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수확 후 건조, 저
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가공, 이용 등 부
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5. 식량작물의 포장 · 유통기술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
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
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 · 해
석 · 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벼 유전체 및 표현체 기반 육
종 연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재배생리과장-----
-----.

1. -----맥류는 -----
----- 생리
및 생태-----

2.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3. 벼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
한 연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삭 제>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재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의 재배기술 개발

2. 뜻겨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
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
(低投入) 기술 개발

3. 식량작물의 한해(寒害) 등 재
해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
경 적응성 연구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병
해충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
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
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신 설>

⑤ 작물환경과장-----
-----.

<삭 제>

2. 식량작물의 신규 유입 병해
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
구

3. ----- 생산환경 개선---

<삭 제>

1. 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 ---
--

<삭 제>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
구

2. 맥류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
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
態)에 관한 연구

3. 맥류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신 설>

4. 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
용한 유전자의 탐색·해석·
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맥류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 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7. 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 맥류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 사료작물 · 풋거름작물의 품
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 사료작물 · 풋거름작물의 유
전자원 수집 · 이용에 관한 연
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
· 사료작물 · 풋거름작물의 재
배기술 개발

4. 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
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
(低投入) 기술 개발

5.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

<신 설>

제22조(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부작물부에 발작물개발과·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두되, 발작물개발과장 및 논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발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경 적응성 연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

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친환경·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제22조(발작물개발부) ① 발작물 개발부장-----

② 발작물개발부에 발작물개발과·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

--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

-----.

③ -----
-----.

1. ~ 3. (생 략)

4. 남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5. (생 략)

④ 논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3. ~ 5. (생 략)

⑤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밭작물개발부-----

5. (현행과 같음)

④ 경지이용작물과장-----
-----.

1. (현행과 같음)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
-----.

1. ~ 5. (현행과 같음)

6.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
술 개발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
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
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
구관·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
양과·발효가공식품과·푸드테
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되,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
술서기관·농업연구원·보건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2.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3.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4.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농식품자원의 수요자 기반 소비 확대 및 정책지원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효 미생물 · 원료 및 기반
· 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
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

4.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
용기술 연구

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
성 증진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
구

7. 농산자원의 식품가공 소재화
에 관한 연구

8. 전통주 등의 과학화 및 산업
화 지원에 관한 연구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푸드테크 접목 미래 식품 소
재 개발 및 데이터 구축 기반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
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
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산자원의 푸드테크 소재화
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안전
성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
발에 관한 연구

5. 농산부산물의 활용 기술 개
발 및 자원순환에 관한 연구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육성계통 포함) 등
용도별 품질 및 감각평가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 등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스마트 품질 제어기
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등의 포장·유통기
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등 기후변화 대응
품질 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
술 개발

5. 농식품자원의 표준화, 규격화
에 관한 연구

6. 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추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제24조(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
로 보한다.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유전자
원 수집·보존·평가 및 생명
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생리생
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 후
관리·이용에 관한 연구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
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제30조(출장소) ①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장 소속으로 남해출장소
를 두고,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
다.

② 출장소의 위치는 「책임운영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

-----.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
-----.

1. ----- 소득식량작물·바
이오에너지작물·아열대식량
작물-----
--

2. 소득식량작물·바이오에너지
작물·아열대식량작물-----

3. 소득식량작물·바이오에너지
작물·아열대식량작물--

4. 소득식량작물·바이오에너지
작물·아열대식량작물의 산업
소재화 기술·수확---

<삭 제>

제30조(출장소) 삭제

<u>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u> 제34조의2(연구소) <u>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한우연구소·가금연구소 및 난지축산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한우연구소장 및 가금연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u>	제34조의2(연구소) <삭 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8</u>	<u>340</u>	+2
.	.	.	
.	.	.	
일반직 계	<u>337</u>	<u>339</u>	+2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 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5</u>	<u>46</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8</u>	<u>19</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9</u>	<u>341</u>	+2
.	.	.	
.	.	.	
일반직 계	<u>338</u>	<u>340</u>	+2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4</u>	<u>45</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6</u>	<u>17</u>	+1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28</u>	<u>482</u>	-46
일반직 계	<u>528</u>	<u>482</u>	-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u>	<u>6</u>	-1
.	.	.	
.	.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u>	<u>0</u>	-1
.	.	.	
.	.	.	
전산주사	<u>2</u>	<u>3</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u>14</u>	<u>13</u>	-1

공업서기	<u>14</u>	<u>13</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u>11</u>	<u>10</u>	-1
공업서기보	<u>5</u>	<u>4</u>	-1
.	.	.	
운전서기보	<u>7</u>	<u>6</u>	-1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5</u>	<u>4</u>	-1
농업연구관	<u>79</u>	<u>77</u>	-2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27</u>	<u>20</u>	-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3</u>	<u>2</u>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 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0</u>	<u>11</u>	+1
농업연구사	<u>249</u>	<u>219</u>	-30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29</u>	<u>483</u>	-46
일반직 계	<u>529</u>	<u>483</u>	-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u>	<u>6</u>	-1
.	.	.	
.	.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u>	<u>0</u>	-1
.	.	.	
.	.	.	
전산주사	<u>2</u>	<u>3</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u>14</u>	<u>13</u>	-1

.	.	.	
공업서기	<u>14</u>	<u>13</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u>10</u>	<u>9</u>	-1
공업서기보	<u>5</u>	<u>4</u>	-1
.	.	.	
운전서기보	<u>7</u>	<u>6</u>	-1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u>5</u>	<u>4</u>	-1
농업연구관	<u>80</u>	<u>78</u>	-2
.	.	.	
.	.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 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27</u>	<u>20</u>	-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3</u>	<u>2</u>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수의 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0</u>	<u>11</u>	+1

농업연구사	<u>249</u>	<u>219</u>	-30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8</u>	<u>381</u>	+43
일반직 계	<u>338</u>	<u>381</u>	+43
.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	
.	.	.	
<u>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사무관	<u>4</u>	<u>5</u>	+1
.	.	.	
행정주사	<u>6</u>	<u>5</u>	-1
.	.	.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u> <u>또는 농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u>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u>전산서기</u>	<u>1</u>	<u><삭 제></u>	-1
.	.	.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또는 식품위생서기보</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보	<u>6</u>	<u>7</u>	+1
운전서기보	<u>8</u>	<u>9</u>	+1
.	.	.	
농업연구관	<u>73</u>	<u>75</u>	+2
<u>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u> <u>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u> <u>환경연구관</u>	<u><신 설></u>	<u>7</u>	+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5</u>	<u>6</u>	+1
.	.	.	
농업연구사	<u>155</u>	<u>182</u>	+27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8</u>	<u>381</u>	+43
일반직 계	<u>338</u>	<u>381</u>	+43
.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농업연구관 · 농업연구 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	
.	.	.	
<u>과학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	
행정사무관	<u>4</u>	<u>5</u>	+1
.	.	.	
행정주사	<u>6</u>	<u>5</u>	-1
.	.	.	
.	.	.	
<u>행정서기</u>	<u><신 설></u>	<u>13</u>	+13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u> <u>또는 농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u>행정서기</u>	<u>13</u>	<u><삭 제></u>	-13
.	.	.	
.	.	.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또는 식품위생서기보</u>	<u><신 설></u>	<u>1</u>	+1
공업서기보	<u>6</u>	<u>7</u>	+1
운전서기보	<u>8</u>	<u>9</u>	+1
.	.	.	
농업연구관	<u>75</u>	<u>77</u>	+2
<u>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u> <u>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u> <u>환경연구관</u>	<u><신 설></u>	<u>7</u>	+7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5</u>	<u>6</u>	+1
.	.	.	
농업연구사	<u>153</u>	<u>180</u>	+27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0</u>	<u>337</u>	+7
일반직 계	<u>330</u>	<u>337</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6</u>	<u>333</u>	+7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1</u>	<u>323</u>	+2
일반직 계	<u>321</u>	<u>323</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7</u>	<u>319</u>	+2
.	.	.	